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정부안 국회 제출

국방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법안이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위 법령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221677]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안)

01
정부안 9.30 국회 제출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이튿날 국방위 접수

02
획득 특례와 전담 거버넌스
R&D 사업타당성조사 배제, 총리 소속 전략위 신설

03
군사용 원자력 첫 규율
원자로 설치·운영·해체에 국방부장관 승인제 도입

기본계획 발표 및 정부안 입법예고

- 2026.05.26 **국방부**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장보고 N 사업 공식화
- 2026.06.02 **한미 양국 정부** 안보협의 출범회의, 핵잠 기본계획과 농축·재처리 논의
- 2026.06.10 **국방부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특별법 신속 입법과 '27년 제도 기반 완비 목표
- 2026.07.29 **국방부**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9.7까지 의견수렴), 연내 제정 방침
- 2026.08.14 **정부** 방사청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6577호),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설치와 17명 한시 증원
- 2026.08.20 **국방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27년까지 건조 기반 구축과 정부입법 추진 공식화
- 2026.08.27 **유용원 의원 등 31인** 의원안 발의, 대통령 소속 전략위와 원안위 승인 체계 제안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2026.09.03 **국방부** '27년 국방예산 73조 2777억 원 편성, 핵잠 사업 착수 반영

2026.09.07 **경실련**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독립 검증과 규제 분리 요구

2026.09.29 **제42회 국무회의** 특별법안 심의·의결, 국정과제(전작권 전환) 연계 명시

2026.09.30 특별법안(2221677, 정부안) 국회 제출, 국방위 접수

2026.10.20 **국회 국방위** 해군 국정감사, 핵잠 추진단 보고와 실전투입 일정 공백 지적

2026.10.27 **INSS·국회 국방위원장실 등** 팩트시트 1주년 입법과제 세미나, 저농축우라늄 집중 제언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국방위 법안심사가 첫 관문입니다. 국방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위법령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40여 년 국가 산업 프로젝트

2026년 5월 발표된 국방부 기본계획은 조선·원자력·방산을 잇는 사업(건조 10년, 운용 3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5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01 저농축우라늄 사용, 장주기 운전

02 국내 개발과 국내 건조

03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 활용

04 총수명주기 관리

05 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

2030 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 목표(기본계획)

4만+
일자리 창출 예상(기본계획)

해외 사례

호주(AUKUS) 추진
미·영과 3국 협정, 핵잠 확보 추진

프랑스 운용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연료 사용

브라질 추진
비핵보유국으로서 핵잠 확보 추진

정부안 - 다섯가지 핵심

기본원칙
PRINCIPLE

핵무기 개발·제조·보유·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2조에 명시했습니다. NPT 등 국제규범 준수와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획득특례
FAST-TRACK

연구개발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제7조). 시험평가·R&D 절차 특례를 두고, 핵물질 확보 지연 시 계약 기간·금액·조건 변경을 허용합니다.

전략위
GOVERNANCE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위원 20명 이내, 5년 한시)를 설치합니다. 전략위 심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로 간주하며, 분과위 2개를 둡니다.

원자력승인
APPROVAL

원자로·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는 행위별로 전략위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합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의무입니다.

산업기반
INDUSTRY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발성과물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합니다.

정부안 - 체계 및 구성

정부안은 본문 50개조와 부칙 5개조로 이뤄집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합니다(제6조).

제1장 총칙 제1~6조	목적과 기본이념, 사업자의 책무,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
제2장 기반조성 제7~15조	획득 특례(제7~11조), 기본계획(제12조), 전략위원회(제13조), 설치지역 지정, 인·허가 의제
제3장 안전관리 제16~36조	원자로 등 승인(제1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전관리준칙, 장해방어조치,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자격증명
제4장 보칙 제37~45조	국제규약조사관 검사 수용, 전문기관·인력 양성기관 지정, 적극행정 면책, 비밀유지 의무
제5장 벌칙 제46~50조	무단 설비 조작·방사성물질 유출 처벌, 비밀누설, 명령 불이행, 양벌규정, 과태료

정부안 - 승인 이후 안전관리

검사·명령 INSPECTION	국방부장관이 검사하고 시정·보완을 명령합니다(제18조). 전략위 심의를 거쳐 이용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설비 통제 CONTROL	설비 사용정지와 재가동 승인(제27·28조), 핵물질 계량관리규정 승인(제20조), 표준설계승인 제도(제19조)를 둡니다.
폐기물·연료 WASTE	방사성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처분시설 위탁이 원칙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합니다(제30·31조).
국제검증 SAFEGUARDS	국제규약조사관의 출입 검사·시료 수거와 감시설비 설치·봉인을 허용합니다(제37조). 비확산 약속의 국내법적 이행 근거입니다.
인력·기관 WORKFORCE	원자로조종감독자 등 자격증명 5종을 신설합니다(제33조). 전문기관 설립·지정과 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도 둡니다(제38·39조).

정부안 - 참여 기업 의무

책무·준칙 DUTY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합니다(제5조). 안전관리준칙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제25조).
점검·보고 REPORTING	자체 점검과 보고, 계약상대자의 결함 보고 의무를 둡니다(제26조).
비밀유지 SECRECY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재하도급 수급업체 임직원(전직 포함)까지 적용합니다(제43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제47조).
의제·면책 STATUS	위원·수탁기관 임직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봅니다(제44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둡니다(제42조).
벌칙 PENALTY	무단 설비 조작·방사성물질 유출로 위험 야기 시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제46조). 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적용(제48조).

정부안 - 보완장치와 남은 과제

정부안 내 보완장치

01 안전관리 업무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조치 의무 제16조⑥

02 승인 심사 시 원안위 자료 확인과 승인 여부 통보 제18조②·③

03 기본계획·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제12조④, 제16조④

남은 과제

01 **재정** 특별회계 규정이 없습니다. 재원 조달은 기본계획과 전략위 심의사항으로 두었고, 비용추계서는 군사기밀 사유로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제12조·제13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02 **핵연료** 한미 팩트시트는 핵물질·기술 이전을 즉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지적과, 저농축우라늄 집중이 현실적 경로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정익 KAIST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고문(10.27 세미나)

03 **이행 기반** 시험용 원자로에만 3년여 건설 기간과 조 단위 예산, 수백 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이춘근 INSS 자문연구위원(10.27 세미나)

법안 비교 - 거버넌스

	정부안 2221677 · 2026.09.30	유용원 의원안 2220836 · 2026.08.27
전략위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소속, 위원장 대통령
전략위 존속	시행일부터 5년 한시	10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로 존속 결정, 결과 국회 통보
분과위원장	획득·운영, 원자력안전 모두 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은 원안위원장, 획득·운영은 국방부장관
원자로·가공시설 승인	전략위 심의 거쳐 국방부장관 승인	전략위 심의 거쳐 원안위 승인,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
계획 체계	기본계획 10년, 시행계획 2년	기본계획 10년, 시행계획 3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 전반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특례 규정만 우선, 그 외는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 등

자료: 각 법률안 의안원문 조문

법안 비교 - 특례와 책임

	정부안 2221677	유용원 의원안 2220836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개발사업에 실시하지 않음(필요적 배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상 제외 가능(임의적)
원가 특례	조항 없음(입법예고안 대비 변경)	원가 특례 규정, 장납기 자재 사전계약, 세출예산 이월
손해배상	별도 배상 규정 없음	국가를 원자력사업자로 보아 책임한도 없이 전액 배상
비상계획	국방부장관 긴급조치, 원안위 등에 기술지원 협조 요청	원안위원장·지자체장과 협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사용후 핵연료	원자력진흥위 심의·의결로 결정	국가 직접 관리, 3년 내 관리계획 국회 보고
비밀누설 벌칙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료: 각 법률안 의안원문 조문

법안 비교 - 안전규제 책임

정부안은 군사용 원자력의 승인·검사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사업 추진과 안전규제의 분리 여부가 심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01

국방부 승인 정부안

전략위 심의 후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고, 원안위에는 기술지원 협조를 요청합니다.

02

원안위 승인 의원안

원자로·핵연료가공시설 승인을 원안위에 부여하고, 원안위는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합니다.

03

독립 규제 보완론 시민사회·연구기관

경실련은 사업과 분리된 독립 규제를, INSS는 군용 원자로 특화 안전규제 체계를 제안합니다.

각계는 어떻게 보나

국방부	국가전략사업으로 연내 제정 추진, 획득 특례와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10.7), 하위법령 착수 보도(10.15)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실전투입 시점과 단계별 일정, 안전관리·인력 계획 보완 요구 해군 국정감사 지적(2026.10.20)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특별법 필요성을 들어 선도 발의, 대통령 소속 전략위와 원안위 승인 설계 의원안 2220836 제안이유(2026.8.27)
한화오션 방위산업계	전담조직 신설과 경력 채용으로 사업 참여 준비 장보고N개발단 신설 발표(2026.10.12)
경실련 시민사회	사전검증 부족과 셀프규제 지적, 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입법예고 의견서(2026.9.7)
전문가·연구기관	저농축우라늄 집중, 종합 실행법 설계와 재정·인력 기반 보완 제언 INSS 이슈브리프 849호, 10.27 세미나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01
- 국방위 심사 일정·쟁점 추적
- 승인 주체·특례 범위 수정 가능성 주시

02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모니터링
- 승인 절차·안전기준 구체화 확인

03
- 참여 기업 지재권·보안 조건 점검
- 지재권 국가 소유, 하도급까지 비밀유지 의무

속도 VS 검증

정부안은 사업타당성조사 배제 등 특례로 일정 준수에 무게를 둡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독립 검증과 결과 공개를, 전문가들은 재정·인력 등 이행 기반 보강을 요구해 심사 과정의 조정이 예상됩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